

「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」 일부개정훈령안

1. 개정이유

위성영상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세부분류기준의 해상도를 높이는 등 민간에서 공간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○ 위성영상 세부분류 기준 완화(안 별표1)

위성영상의 공개제한 해상도 완화(4m→1.5m), 정밀보정하지 않은 2차원 좌표 공개, 신속한 보안 처리를 위해 국가보안·군사시설 중 노출 대상을 국가정보원장 또는 국방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해당사항 없음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「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」 일부개정훈령안

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의 위성영상의 공개제한의 분류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정밀보정된 2차원좌표가 포함된 해상도 30m 보다 정밀한 자료
-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과 군사시설(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)이 노출된 해상도 1.5m보다 정밀한 자료
- 3차원좌표가 포함된 해상도 90m보다 정밀한 자료
- 단, 국가보안시설 또는 군사시설 중 노출되지 않아야 할 대상은 국가정보원장 또는 국방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함

별표 1의 위성영상의 공개의 분류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“비공개” 및 “공개제한” 대상 이외의 위성영상 및 3차원 위성자료
-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(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) 이외 지역의 자료(인터넷·내비게이션·휴대폰에는 좌표 표시 불가)
- 단, 해상도 25cm보다 정밀한 위성영상 제공 또는 판매 시 인적사항 및 사진내용에 대한 기록 유지
- 좌표를 포함하여 온라인으로 배포할 경우 정밀보정하지 않은 2차원 좌표만 포함 가능

부 칙

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국가공간정보 세부분류기준 개정 전문

공간정보	등급	분류 기준
항공사진	비공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(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)이 노출된 사진 및 영상, 3차원 입체자료
	공개제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(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)이 삭제된 흔적이 남아 있는 사진 및 영상, 3차원 입체자료 ○ 2차원 좌표(緯·經度)가 포함된 해상도 30m보다 정밀한 자료 ○ 3차원 좌표(緯·經·高度)가 포함된 해상도 90m보다 정밀한 자료
	공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“비공개” 및 “공개제한” 대상 이외의 항공사진 및 영상, 3차원 입체자료(인터넷·내비게이션·휴대폰에는 좌표 표시 불가) ○ 해상도 25cm보다 정밀한 항공사진은 건물·토지의 소유자와 법 제2조 제4항의 관리기관 및 관리기관의 장이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 또는 판매하고, 인적 사항 및 사진 내용을 기록 하여야 한다. ○ 단, 올림픽 등 국제행사 지역은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, 행사기간 동안 해상도 25cm보다 정밀한 항공사진을 일반인에게 제공 또는 판매할 경우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
위성영상	비공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(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)이 노출된 3차원 위성자료
위성영상	공개제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정밀보정된 2차원좌표가 포함된 해상도 30m보다 정밀한 자료 ○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과 군사시설(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)이 노출된 해상도 15m보다 정밀한 자료 ○ 3차원좌표가 포함된 해상도 90m보다 정밀한 자료 ○ 단,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 중 노출되지 않아야 할 대상은 국가정보원장 또는 국방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함

	공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“비공개” 및 “공개제한” 대상 이외의 위성영상 및 3차원 위성자료 ○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(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) 이외 지역의 자료(인터넷·내비게이션·휴대폰에는 좌표 표시 불가) ○ 단, 해상도 25cm보다 정밀한 위성영상 제공 또는 판매 시 인적사항 및 사진내용에 대한 기록 유지 ○ 좌표를 포함하여 온라인으로 배포할 경우 정밀보정하지 않은 2차원좌표만 포함 가능
전자지도	비공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축척에 관계없이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(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)이 포함된 지도
	공개제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군사지도 ○ 전력·통신·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 ○ 단, 항공기·선박의 안전항행 등에 필요한 전력·통신·가스 등 국가기간시설은 보안성 검토를 거쳐 지도에 표기 ○ 1:1,000 축척 이상 지도의 등고선과 표고점
	공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“비공개” 및 “공개제한” 대상 이외의 지도 ○ 인터넷·내비게이션·휴대폰 등을 통해 좌표와 1:5,000 축척 이상 지도의 등고선·표고값 표시 불가
해양 공간정보	비공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접경해역 수심 자료 ○ 좌표가 표기되어 있고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 인근 해역 또는 접경해역내 해상도 30m보다 정밀한 해저 영상자료
	공개제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좌표가 포함된 해상도 120m보다 정밀한 수심 자료 ○ 단, 공개제한 대상 수심이라도 항해안전, 해양레저, 해양공간정보 산업화 등에 필수적인 해역의 수심은 관계기관 협의 후 공개 ○ 좌표가 포함된 해상도 90m보다 정밀한 해저 영상자료
	공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“비공개” 및 “공개제한” 대상 이외의 수심 ○ “비공개” 및 “공개제한” 대상 이외의 해저 영상자료
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해도, 전자해도 등
기타 공간정보	비공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 (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)이 노출된 3차원 공간정보 ○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 (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)의 명칭 및 속성자료
	공개제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 시설의 명칭 및 속성자료 ○ 해상도가 90m보다 정밀하고 3차원 좌표가 포함된 3차원 공간정보 ○ 단, 해상도 90m보다 정밀하고 3차원 좌표가 포함된 공간정보 중 도로 지역은 보안성 검토를 거쳐 국가안보상 위해 요인이 없는 경우 공개
	공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“비공개” 및 “공개제한” 대상 이외의 기타공간정보 ○ 좌표가 없는 일반지역 3차원 영상자료 ○ 3차원 좌표가 있고 해상도가 90m보다 낮은 입체영상자료 ○ 토양·지질·지번도, 도시·도로 건설계획도 등